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4
----------	-------

발의연월일 : 2018. 6. 25.

발의자 : 이태규 · 김현아 · 김경진  
이동섭 · 신용현 · 김삼화  
김승희 · 최도자 · 채이배  
오신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보화교육을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

제1호 및 제2호 신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는 정보화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u>1.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는 정보화교육</u></p> <p><u>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u></p>